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BK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
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bk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7년 04월 12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
|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 → www.kofia.or.kr |
|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표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나. 특수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나. 과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나. 주요 업무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2) 자산운용보고서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4) 기타장부 및 서류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2) 수시공시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증개업자 선정 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투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58351)

(작성기준일 : 2016.09.30)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B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여 업종 대표주식 및 향후 업종대표주로 부상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IBK자산운용 주식회사(02-727-88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7.04.12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참고		
종류(Class)	A	C1	S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 판매시스템
판매수수료	[선취] 납입금액의 1.0% 이내		[후취]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환매수수료	-		
보수 (연, %)	판매	0.7500	1.300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0.7450	[신탁업자]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150
	기타	0.0029	-
	총보수비용	1.5529	2.1000
	합성총보수·비용	1.5580	2.1000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e/I/C-P/C-w/S-P/C2/C3/C4/Ce 클래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매 3개월 후급이며,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사유 발생시 지급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배당수익 및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KOSPI × 10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s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 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업종 대표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구성>

- 핵심 포트폴리오 종목 투자전략: 일차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초기 투자목적이 훼손되거나 기업의 성장이 추가에 충분히 반영된 이후 매도/월별 운용현황 점검 후 재조정 작업 지속 시행
- 장기 성장 종목 투자전략: 향후 업종대표주로 부상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초과 수익 달성.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에 집중
- 텐어라운드 종목 투자전략: 텐어라운드 초기 국면에 발굴하기 위해 중점 노력. 이익 회복이 본격화 되어 PER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집중 투자

※상기 운용전략은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운용전문인력(2016.09.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신동걸	1967	책임 운용 인력 (상무)	123개	14,838억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 한국운용(98~07:주식운용) - IBK 자산운용(07.02~09.08) - KTB 자산운용(09.09~12.01) - IBK 자산운용(12.02~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현수	1973	부책임 운용 인력 (이사)	3개	558억	- 서울대 섬유고분자공학 - 동원투자신탁운용(99.12~05.06) - 한국투자신탁운용(05.07~06.04) - 피데스투자자문(06.05~07.06) - IBK 자산운용(07.06~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 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5.10.01 ~16.09.30	14.10.01 ~15.09.30	13.10.01 ~14.09.30	12.10.01 ~13.09.30	11.10.01 ~12.09.30
그랑프리한국대표주식A	8.89	-8.90	-0.64	-0.44	16.49
비교지수	4.12	-2.84	2.08	-0.15	13.93

주1) 비교지수 : KOSPI × 100%

주2) 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과 리스크 관리, 운용과 매매분리, 사전 운용지시 및 모델 포트폴리오 복제 시스템을 통하여 독립된 위험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1) 과세**

다음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 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종류 C-P / S-P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C1 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2 클래스 → C3 클래스 → C4 클래스로 자동전환됩니다. 참고로 C2/C3/C4 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 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8351)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B	종류 Ae	종류 I	종류 S	종류 C-P	종류 C-w	종류 S-P
한국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58352	93010	58501	A3343	AP735	BI528	BM630	BM631

(종류) 클래스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한국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BO376	BO378	BO379	BO381	BO38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투자신탁해지일까지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매입)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1) 기준시간([오후 3시30분](#))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2) 기준시간([오후 3시30분](#))경과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8351)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B	종류 Ae	종류 I	종류 S	종류 C-P	종류 C-w	종류 S-P
한국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58352	93010	58501	A3343	AP735	BI528	BM630	BM631

(종류) 클래스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한국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BO376	BO378	BO379	BO381	BO38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06.07.10	최초설정
2006.10.09	집합투자규약 변경(집합투자업자보수 하향조정,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하향조정)
2008.05.06	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대상 주식선물 추가)
2008.10.22	집합투자규약 변경(주식형비과세혜택 반영)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기은SG 그랑프리 한국대표 주식투자신탁→ 기은SG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08.28	변경등록 (운용전문인력 변경 : 신동걸 → 김영민, 정기갱신 및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반영 및 수익률등 업데이트)
2010.02.19	집합투자규약등 변경 ①펀드명칭, 집합투자업자명칭 변경 ②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반영 ③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과세방법 변경 반영 ④투자대상인 주식에 공모주를 포함
2010.07.13	집합투자규약 변경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지사유 변경
2010.11.09	제4기 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제표 반영
2011.01.13	집합투자업자 주소 이전으로 인한 신고서 변경
2011.05.04	집합투자규약 변경 ①전문투자자 가입전용 종류I 신설
2011.06.2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영민 상무 → 김현수 부장)
2012.02.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현수부장 → 신동걸 상무)
2013.07.01	집합투자규약 변경(모자형으로 변경)
2013.10.07	자본시장법 개정(2013.08.29 시행) 반영 및 확정된 재무현황 업데이트
2013.12.23	비교지수(BM) 변경
2014.03.04	①S클래스 신설 ②회사정보 업데이트

2014.07.01	기업공시서식 개정 / 회사정보 업데이트
2014.09.19	①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운용인력변경시 수시공시 방법) ②투자유의사항 FATCA반영 ③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및 회사정보 업데이트
2015.10.13	①집합투자규약 변경 (자본시장법개정 반영, 단기자금운용방법 추가, 소규모해소에 관한 사항 신설) ②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및 회사정보 업데이트 ③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반영(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신한아이티스)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20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변경(11.6% -> 13.3%)
2016.08.01	①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②펀드과세 방법 관련 세법 개정 반영
2016.10.12	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②신용등급 관련 내용 추가 ③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및 회사정보 업데이트 ④종류C-P신설 ⑤종류 I: 환매수수료 삭제
2017.02.28	①종류C-w / S-P 신설
2017.04.12	①종류C1/ C2/ C3/ C4/ Ce 신설 ②종류E 명칭변경 (종류E-> 종류Ae)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IBK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연락처 : 02-727-8800, www.ibkasset.com)

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6.09.30 기준)

해당 모두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은 아래 자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동일합니다.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신동걸	1967	상무	123개	14,83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 한국운용(98~07:주식운용) - IBK 자산운용(07.02~09.08) - KTB 자산운용(09.09~12.01) - IBK 자산운용(12.02~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상기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현수	1973	이사	3개	55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섬유고분자공학 - 동원투자신탁운용(99.12~05.06) - 한국투자신탁운용(05.07~06.04) - 피데스투자자문(06.05~07.06) - IBK 자산운용(07.06~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상기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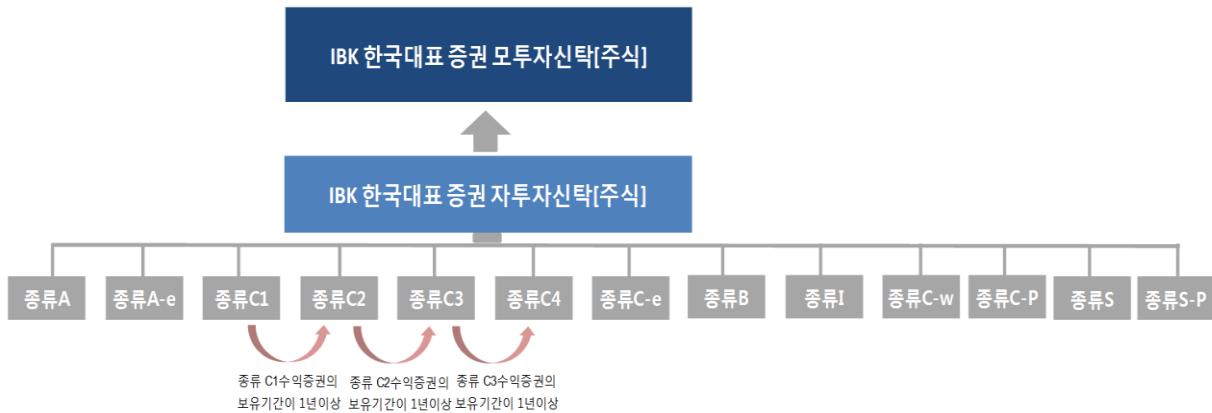
주 3)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③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류재천	2005.01.17 ~ 2006.03.27
최용규	2006.03.27 ~ 2007.02.15
신동걸	2007.02.15 ~ 2009.08.18
김영민	2009.08.18 ~ 2011.06.22
김현수	2011.06.23 ~ 2012.01.31
신동걸	2012.02.01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내용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주식 60%이상 투자
	투자목적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각 업종대표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비교지수 KOSPI 100%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포트폴리오 종목 투자전략: 일차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초기 투자목적이 훼손되거나 기업의 성장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이후 매도/월별 운용현황 점검 후 재 조정 작업 지속 시행 장기 성장 종목 투자전략: 향후 업종대표주로 부상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초과 수익 달성.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에 집중 턴어라운드 종목 투자전략: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에 발굴하기 위해 중점 노력. 이익 회복이 본격화 되어 PER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집중 투자
	주요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3.06.13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A	납입금액 및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연 0.7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
B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이내	-
A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연 0.15%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
I	투자자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연 0.03%	-	-2016년 10월 11일까지 환 매청구시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2016년 10월 12일부터 환 매청구시: 없 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 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 되는 집합투자증권	연 0.15%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의 가입자	연 0.70%	-	-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 좌를 보유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제3항에 따른 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 법 시행령 제103 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 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	-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연 0.12%	-	-
C1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연 1.30%	-	-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연 1.10%	-	-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연 0.90%	-	-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연 0.70%	-	-
C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연 0.65%	-	-

주1)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배당수익 및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KOSPI × 100%

비교지수 정의

KOSPI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입니다.

비교지수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 모투자신탁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 자산운용의 홈페이지 (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60%이상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신탁업자 고유자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4.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상기 2.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

(1)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u>취득</u>)

		<u>신</u>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 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차입	1 내지 4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0.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1.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2.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13.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1)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 2.채권, 4.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소 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2) (주1)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2.채권, 4.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주1)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나. 투자제한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단기대출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
동일종목투자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u>어음[기업어음증권]</u>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u>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u>,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이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법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u>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u>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같습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p>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가)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투자	이 투자신탁 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업종 대표주식에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OSPI × 100%

비교지수 정의

KOSPI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입니다.

비교지수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 모투자신탁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 (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구성>

- 핵심 포트폴리오 종목 투자전략: 일차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초기 투자목적이 훼손되거나 기업의 성장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이후 매도/월별 운용현황 점검 후 재조정 작업 지속 시행
- 장기 성장 종목 투자전략: 향후 업종대표주로 부상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초과 수익 달성.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에 집중
- 텐어라운드 종목 투자전략: 텐어라운드 초기 국면에 발굴하기 위해 중점 노력. 이익 회복이 본격화 되어 PER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집중 투자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 관리

투자목적과 리스크 관리, 운용과 매매분리, 사전 운용지시 및 모델 포트폴리오 복제시스템을 통하여 독립된 위험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오후 3시30분경과후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 투자신탁 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므로 주식시장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13.3%** (직전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1.6%)
 주 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을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3)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주1)}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 1)수익률 변동성: $\sigma = \sqrt{\frac{52}{156-1} \sum_{t=0}^{155} (r_t - \bar{r})^2}$, $\bar{r} = \frac{1}{156} \sum_{t=0}^{155} r_t$,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A	납입금액 및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B	납입금액이 5 억원 이상인 경우
A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I	투자자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 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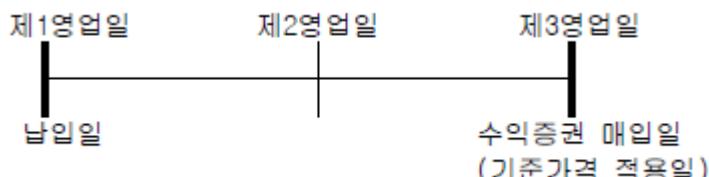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C1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C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선취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각 목의 종류에 따라 부과합니다.

- (가) 종류 A : 납입금액의 1% 이내
- (나) 종류 B : 납입금액의 0.5% 이내
- (다) 종류 Ae : 납입금액의 1% 이내

주)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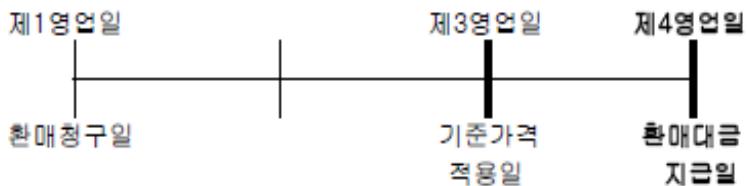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주)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 종류 S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4)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계속 투자중인 기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됩니다.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A, B, Ae, S, <u>C-P</u> <u>C-w /S-P/Ce</u> <u>C1,C2,C3,C4</u>	종류 I	
환매수수료	2016년 10월 11일까지 환매청구시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016년 10월 12일부터 환매청구시	-	없음

주)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환매수수료의 면제

- ①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전부가 환매되는 경우
- ②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
- ③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가)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②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이전에 추가 매수 및 환매(일부환매를 포함합니다)를 청구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매수 및 환매 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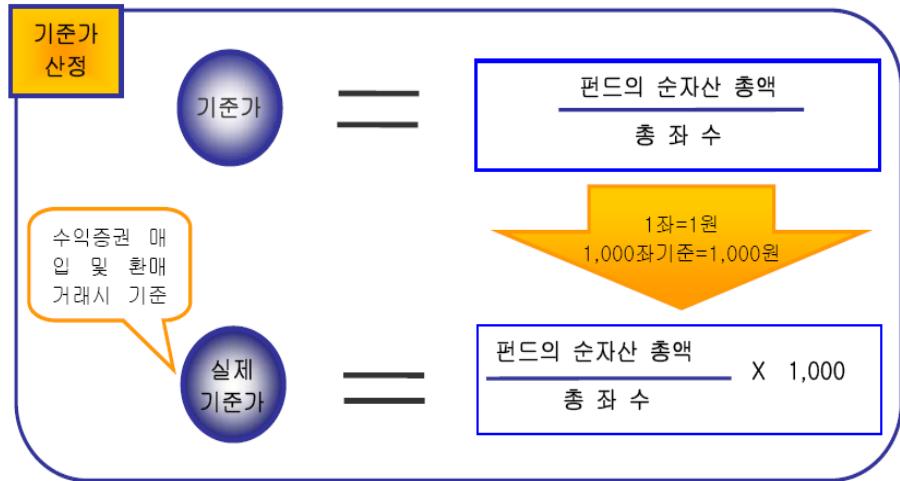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 판매회사 · 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두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장외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평가회사의 가격평가 방법 국내 KRW IRS금리 및 USD를 비롯한 주요 통화 IRS 금리를 기초로 하여 고정금리 부분 평가와 변동금리부분평가에 의한 차이에 의해 가격을 평가함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평균한 가격(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⑥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기타 상기에 명시된 자산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구성

평가업무 담당임원, 운용업무 담당임원,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나)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라)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된 채권평가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사)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아)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관련법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등에 의해 위임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법 제 76 조제 4 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B	종류 Ae	종류 I	종류 S	C-P, C-w S-P, Ce C1, C2, C3, C4	
선취판매수수료	1%이내	0.5% 이내	1%이내	-	-	-	납입금액 기준
후취판매수수료	-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의 0.15%이 내	-	환매금액 기준
환매수수료	-	-	-	2016년 10월 11 일까지 환매청 구시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2016년 10월 12 일부터 환매청	-	-	이익금기준

				구시: 없음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①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전부가 환매되는 경우

②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

③"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별 수익자의 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A	납입금액 및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B	납입금액이 5 억원 이상인 경우
A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I	투자자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 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C1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Ce	인터넷에 의하여 가입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종류별 보수구조>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 시기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B	종류 Ae	종류 I	종류 S	종류 C-P	종류 C-w	종류 S-P	

집합투자업자보수	0.745								
판매회사 보수	0.750	0.750	0.150	0.03	0.150	0.700	-	0.120	매 3 개월 후급
신탁업자 보수	0.04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기타 비용	0.0029	-	0.0027	0.0026	0.0000	-	-	-	사유 발생 시
총보수 및 비용	1.5529	1.5500	0.9527	0.8326	0.9500	1.500	0.80	0.920	
합성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 비용 포함)	1.5580	1.5500	0.9577	0.8376	0.9554	1.500	0.80	0.920	
증권 거래비용	0.5205	-	0.5198	0.5191	0.5697	-	-	-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745							
판매회사 보수	1.30	1.10	0.90	0.70	0.65			매 3 개월
신탁업자 보수	0.040							후급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기타 비용	-	-	-	-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2.10	1.90	1.70	1.50	1.45			-
합성 총보수 비용								-
증권 거래비용	2.10	1.90	1.70	1.50	1.45			사유 발생시

주1)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매매수수료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을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2)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다른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없습니다.

주5)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합니다)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

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58	586	937	1,92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58	587	939	1,930
종류 B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63	505	871	1,89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3	505	871	1,898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97	400	620	1,25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7	401	622	1,257
종류 I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85	267	464	1,03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6	268	466	1,038
종류 S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97	304	528	1,17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306	531	1,177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58	489	843	1,84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8	489	843	1,841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84	263	456	1,016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4	263	456	1,016
종류 S-P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97	302	524	1,16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7	302	524	1,162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21	680	1,166	2,50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1	680	1,166	2,504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00	617	1,059	2,28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0	617	1,059	2,288
종류 C3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79	553	952	2,067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9	553	952	2,067
종류 C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58	489	843	1,84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8	489	843	1,841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종류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52	473	816	1,78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2	473	816	1,78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S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수 있으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8월 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0 기(2015.07.10 - 2016.07.09)	성도회계법인	적정
제 9기(2014.07.10 - 2015.07.09)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8기(2013.07.10 - 2014.07.0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

항 목	제 10기 (2016.07.09)	제 9기 (2015.07.09)	제 8기 (2014.07.09)
	제 10기 (2015.07.10 - 2016.07.09)	제 9기 (2014.07.10 - 2015.07.09)	제 8기 (2013.07.10 - 2014.07.09)
운용자산	45,447,003,489	55,233,120,870	78,664,028,982
증권	44,787,987,346	54,453,401,157	78,271,298,63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59,016,143	779,719,713	392,730,34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6,630,222	352,192,767	599,635,411
자산총계	45,523,633,711	55,585,313,637	79,263,664,39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39,809,929	558,655,467	788,897,550
부채총계	239,809,929	558,655,467	788,897,550
원본	51,484,650,181	60,331,152,586	86,192,967,316
수익조정금	292,478,926	-1,359,118,293	-7,690,721,342
이익잉여금	-6,493,305,325	-3,945,376,123	-27,479,131
자본총계	45,283,823,782	55,026,658,170	78,474,766,843
항 목	제 10기 (2015.07.10 - 2016.07.09)	제 9기 (2014.07.10 - 2015.07.09)	제 8기 (2013.07.10 - 2014.07.09)
	제 10기 (2015.07.10 - 2016.07.09)	제 9기 (2014.07.10 - 2015.07.09)	제 8기 (2013.07.10 - 2014.07.09)
운용수익	-1,209,741,277	1,231,613,050	14,141,371,500
이자수익	8,709,753	7,327,299	8,581,260
배당수익	0	0	812,847,525
매매/평가차익(손)	-1,218,451,030	1,224,285,751	13,319,942,71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711,637,535	1,015,793,503	1,561,930,938
관련회사 보수	711,637,535	1,015,793,503	1,561,930,938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0,376,814	14,142,202	20,142,172
당기순이익	-1,931,755,626	201,677,345	12,559,298,39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10기(2016.07.09)		제9기(2015.07.09)		제8기(2014.07.0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59,016,143		779,719,713		392,730,347	
1. 현금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여름						
4. 대출금						
유가증권		44,787,987,346		54,453,401,157		78,271,298,635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4,787,987,346		54,453,401,157		78,271,298,63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76,630,222		352,192,767		599,635,411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49,057		217,531		186,212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76,481,165		351,975,236		599,449,199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45,523,633,711		55,585,313,637		79,263,664,393
부 채						
운용부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부채		239,809,929		558,655,467		788,897,55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75,961,517		349,549,868		495,249,376	
4. 수수료미지급금	163,848,412		209,105,599		293,648,174	
5. 기타미지급금			0		0	
6. 기타부채		239,809,929		558,655,467		788,897,550
부 챈 총 계						
자 본						
1. 원 본	51,484,650,181		60,331,152,586		86,192,967,31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6,200,826,399		-5,304,494,416		-7,718,200,473	
(발행좌수 당기:	51,484,650,181	좌	이의잉여금	-6,493,305,325	-3,945,376,123	-27,479,131
전기:	60,331,152,586	좌	수익조정금	292,478,926	-1,359,118,293	-7,690,721,342
전전기:	86,192,967,316	좌)				
(기준가격 당기:	979.33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45,283,823,782		55,026,658,170		78,474,766,843
부 챈 와 자 본 총 계		45,523,633,711		55,585,313,637		79,263,664,393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0기(2015.07.10-2016.07.09)		제9기(2014.07.10-2015.07.09)		제8기(2013.07.10-2014.07.09)	
	금	액	금	액	금	액
운용수익						
1. 투자수익		8,709,753		7,327,299		821,428,785
1. 이자수익	8,709,753		7,327,299		8,581,260	
2. 배당금수익					812,847,525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20,429,910		3,341,370,911		13,879,312,741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20,429,910		3,341,370,911		13,879,312,74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938,880,940		2,117,085,160		559,370,026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553	
8. 기타거래손실	1,938,880,940		2,117,085,160		559,369,473	
운용비용		722,014,349		1,029,935,705		1,582,073,110
1. 운용수수료	363,177,902		510,980,836		761,842,370	
2. 판매수수료	328,960,805		477,377,793		759,184,500	
3. 수탁수수료	19,498,828		27,434,874		40,904,068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0,376,814		14,142,202		20,142,17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931,755,626		201,677,345		12,559,298,39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37521001		0.003342839		0.14571140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07.10 - 2016.07.09	549	549	77	73	162	155	464	454
2014.07.10 - 2015.07.09	401	401	642	642	495	503	549	552
2013.07.10 - 2014.07.09	758	1,354	255	492	611	1,199	401	788

(주)2014.07.10 - 2015.07.09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34,537,576좌/134,537,576원

[종류 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07.10 - 2016.07.09	549	495	79	67	168	144	460	400
2014.07.10 - 2015.07.09	848	772	157	142	456	418	549	495
2013.07.10 - 2014.07.09	1,147	966	536	484	835	760	848	772

(주)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종류 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07.10 - 2016.07.09	8	7	1	1	2	2	7	6
2014.07.10 - 2015.07.09	14	13	4	3	10	9	8	7
2013.07.10 - 2014.07.09	15	13	9	8	10	10	14	13

(주)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종류 I]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07.10 - 2016.07.09	46	46	1	1	0	0	48	46
2014.07.10 - 2015.07.09	0	0	107	110	61	65	46	48
2013.07.10 - 2014.07.09	436	371	0	0	20	411	0	0

(주1)2014.07.10 - 2015.07.09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34,537,266좌/134,537,266원

[종류 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07.10 - 2016.07.09	0	0	1	1	0	0	0	0
2014.07.10 - 2015.07.09	0	0	0	0	0	0	0	0
2013.07.10 - 2014.07.09	0	0	0	0	0	0	0	0

(주1)2014.07.10 - 2015.07.09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310좌/3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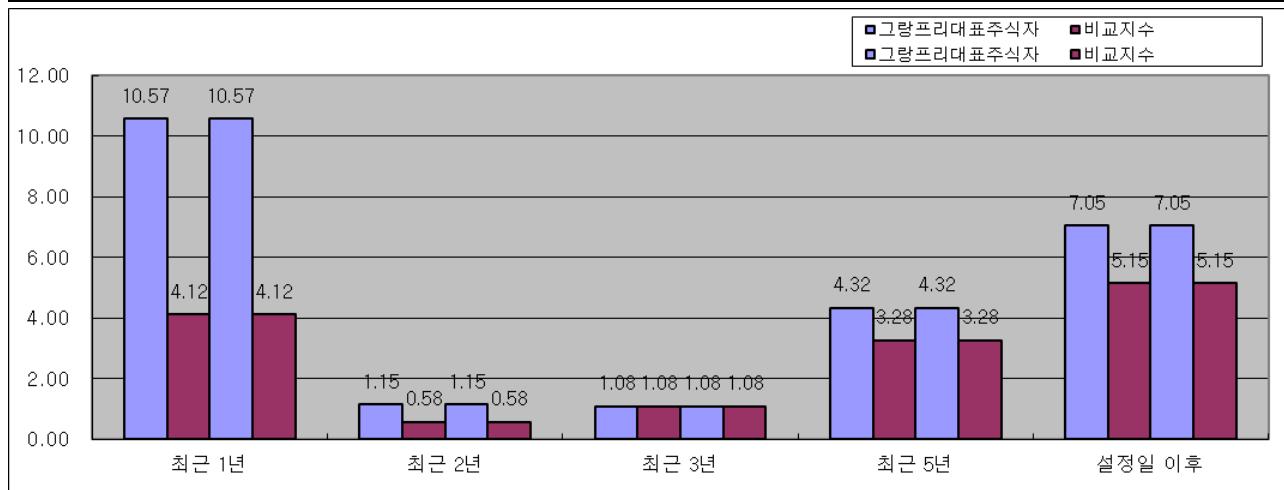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5.10.01 ~16.09.30	14.10.01 ~16.09.30	13.10.01 ~16.09.30	11.10.01 ~16.09.30	06.07.10 ~16.09.30
그랑프리대표주식자	10.57	1.15	1.08	4.32	7.05
비교지수	4.12	0.58	1.08	3.28	5.15
그랑프리대표주식A	8.89	-0.40	-0.48	2.71	5.42
비교지수	4.12	0.58	1.08	3.28	5.15
그랑프리대표주식Ae	9.54	0.20	0.12	3.33	6.15
비교지수	4.12	0.58	1.08	3.28	4.97
그랑프리대표주식I	9.67				1.93
비교지수	4.12				2.14
그랑프리대표주식S	9.62	0.55			0.29
비교지수	4.12	0.58			0.80



주1)비교지수 : KOSPI × 100%

주2)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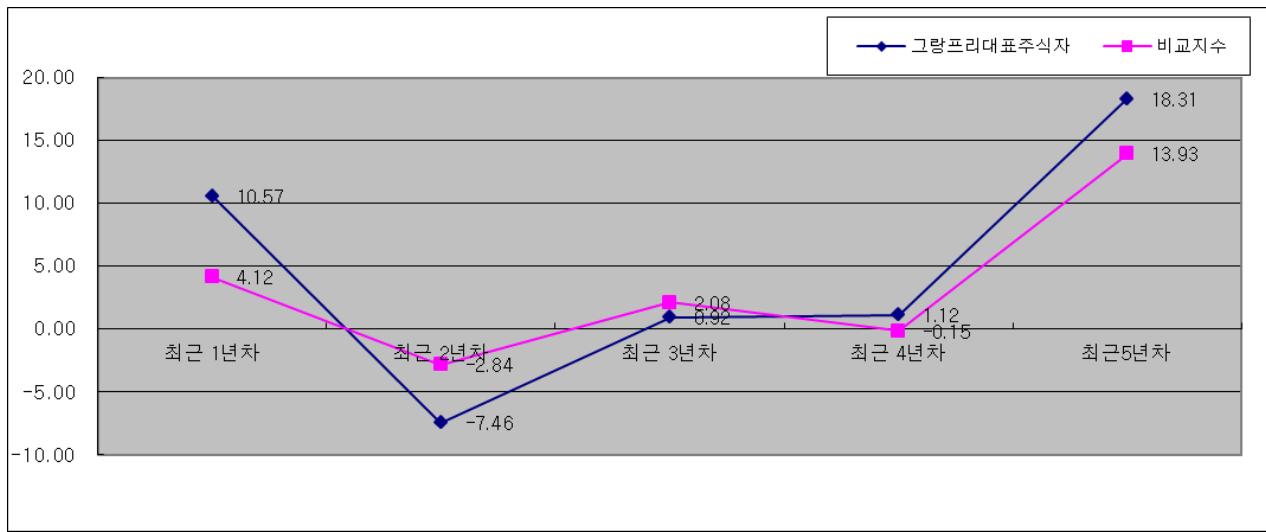
주3)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5.10.01 ~16.09.30	14.10.01 ~15.09.30	13.10.01 ~14.09.30	12.10.01 ~13.09.30	11.10.01 ~12.09.30
그랑프리대표주식자	10.57	-7.46	0.92	1.12	18.31
비교지수	4.12	-2.84	2.08	-0.15	13.93
그랑프리대표주식A	8.89	-8.90	-0.64	-0.44	16.49
비교지수	4.12	-2.84	2.08	-0.15	13.93
그랑프리대표주식Ae	9.54	-8.35	-0.04	0.16	17.19
비교지수	4.12	-2.84	2.08	-0.15	13.93
그랑프리 대표주식I	9.67	-5.56			
비교지수	4.12	-0.15			
그랑프리대표주식S	9.62	-7.76			
비교지수	4.12	-2.84			



주1) 비교지수 : KOSPI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을 연간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6.07.09. 기준, 단위:억원, %)

통화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기타	자산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출 및 예 금		총액
원화	0	0	0	448	0	0	0	0	0	7	0	455
	(0.00)	(0.00)	(0.00)	(98.47)	(0.00)	(0.00)	(0.00)	(0.00)	(0.00)	(145)	(0.08)	(100.00)
합계	0	0	0	448	0	0	0	0	0	7	0	455
	(0.00)	(0.00)	(0.00)	(98.47)	(0.00)	(0.00)	(0.00)	(0.00)	(0.00)	(145)	(0.08)	(100.00)

주1)()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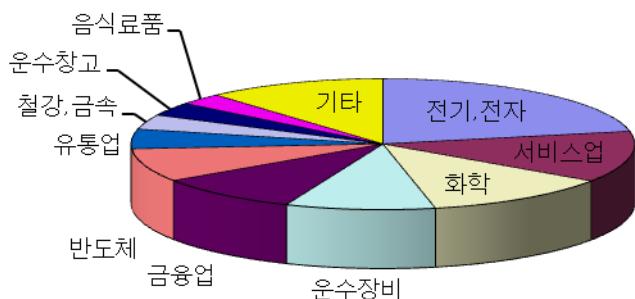
(1)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억원,%)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 :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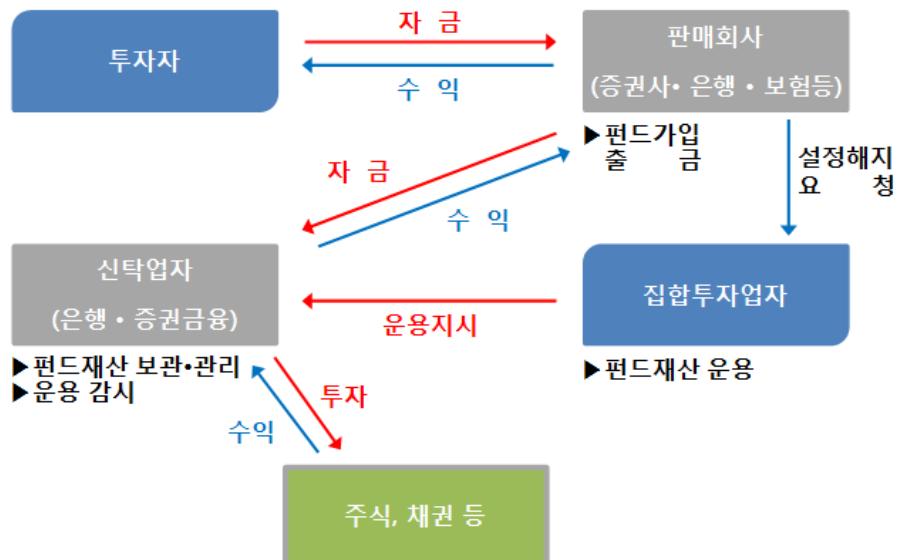
업종명	국내주식	
	평가액	비중
전기,전자	85	21.90
서비스업	49	12.66
화학	47	12.10
운수장비	37	9.58
금융업	36	9.33
반도체	32	8.22
유통업	19	4.84
철강,금속	14	3.62
운수창고	13	3.38
음식료품	11	2.82
기타	45	11.54
합계	389	99.99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6.09.30기준)

회사명	IBK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연락처 : 02-727-8800, www.ibkasset.com)
회사 연혁	2004.10.26 : 기은 SG 자산운용 설립 2010.01.28 : 회사명 변경(기은 SG 자산운용 → IBK 자산운용) 2010.12.17 : 본사 이전
자본금	200 억
주요주주현황	IBK 기업은행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요약 대차대조표]**[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5.12.31.	2014.12.31.	계정과목	'15.1.1 ~'15.12.31	'14.1.1 ~'14.12.31
현금및예치금	328	330			
매도가능금융자산	15	15			
유형자산	4	4	영업수익	142	137
무형자산	11	4			
기타자산	70	72			
자산총계	458	425	영업비용	89	90
기타부채	23	23	영업이익	53	48
부채총계	23	23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53	47
자본금	200	200			
이익잉여금	235	202	당기순이익	40	35
자본총계	435	402			

라. 운용자산 규모

(2016.09.30 현재, 단위: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	파생					
수탁고	5,704	16,828	11,227	756	5,360	13	0	0	90,491	130,379

주)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일임자산 제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대문로2가 9-1 ☎ 02)1588-9999

회 사 연 협 등 (홈 페 이 지 참 조)	1963.02 국민은행으로 설립 (www.kbstar.com)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 02-2168-0400
회 사 연 협 등 (홈 페 이 지 참 조)	2000. 06 설립 (www.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울곡로88 상환빌딩 4층 ☎ 02-399-3350	서울 영등포구 국회 대로70길 19 ☎ 02-398-39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 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1.05 설립 www.koreaap.com	2000.06. 설립 www.nicepni.com	2000.06. 설립 www.bond.co.kr	2011.06. 설립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 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 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

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능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할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 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 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 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약관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합니다)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 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나)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다)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없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나)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

우

- (다)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 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5)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룡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에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②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③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환매연기 또는 환매 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	-	-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증거거래시장점유율, 거래관련자격보유,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

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열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